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보훈처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6. . ~ 7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3 중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“14”를 “13”으로 하고,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3 다음에 “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(비서) 1”를 신설한다.

별표 3의2 중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“14”를 “13”으로 하고,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3 다음에 “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(비서) 1”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3]

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시설 서기 또는 전산서기	<u>14</u>	<u>13</u>	-1
<u>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</u> <u>상당(비서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3의2]

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 서기 또는 전산서기	<u>14</u>	<u>13</u>	-1
<u>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(비서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